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7.>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구 분	시장의 종류
1. 시장의 인정여부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2. 시장의 크기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3. 시장의 소유자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4. 상권의 크기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시장
5. 시장의 형태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6. 시장의 개설주기	상설시장, 정기시장
7. 시장의 취급상품	종합시장, 전문시장